삼정 KPMG

바로 보는 법규·정책

2026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2026.06.05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2026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지정 유예제도는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주기적 지정 3년 유예로 '9년간' 자유선임 가능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획득 시 지정유예 대상

평가 분야(*)	배점
1. 감사기능 독립성	300
2. 감사기구 전문성	200
3.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250
4.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150
5. 자체 노력	100
외부 표창	+ 50
사회적 물의	− 50
합계	1,000 (최대 1,050)

평가만점(1000점) 중 650점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인 선임절차 평가에서 결정

주기적 지정 유예대상 회사는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유예요건을 유지하고 준수사항 등을 보고해야 함

Source : 금융감독원, 회계감사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유예제도 설명자료(2026), 2026.04.22
(*) 자세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 배점표는 하단의 참고 장표를 참고 바랍니다.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2026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2026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신청 및 평가 일정

Timeline

2026년 6월 1일~ 2026년 6월 22일
- 평가기준일('26.6.1.)로부터 3주간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

2026년 7~8월
- 실무안 마련(금융감독원 주관, 한국ESG기준원 지원)

2026년 8월
- 평가위원회 평가

2026년 9월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예대상 회사 결정

2026년 10월 15일
- 주기적 지정(유예적용회사 外) 사전통지

'주기적 지정 유예대상은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② 新 외감법 시행 이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로서 ③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유가•코스닥)

(*) 2026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중인 회사도 포함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2026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란?

지정 유예 적용대상

➢ 유예대상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 이후에 처음 실시하는 주기적 지정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유예함

➢ 증선위 의결일 현재 주기적 지정 중인 회사는 **동 지정기간 종료 후에** 처음 실시하는 주기적 지정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유예함

지정 유예 적용사례

사례1 ’18~’20년 직권 지정 이후, ’21~’26년 감사인 자유선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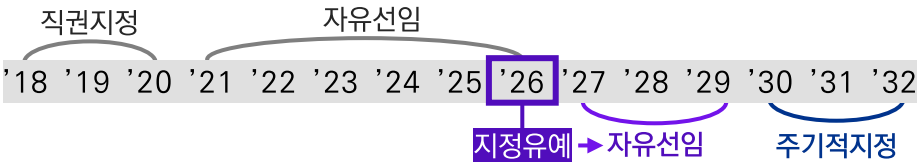

‘26년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 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 시기인** ’27~’29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혜택**

사례2 ‘24년까지 자유선임 이후, ’25~’27년 주기적 지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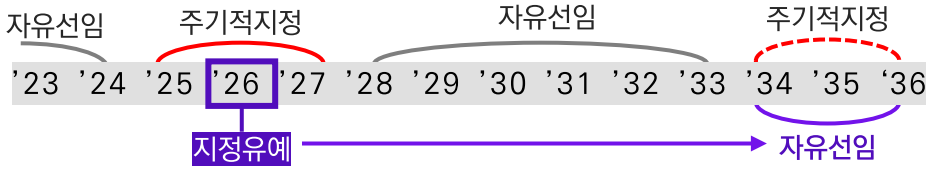

‘26년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 시, **진행중인 지정감사 3년 마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시기인** ’34~’36에 **감사인 자유선임 혜택**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2026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주요 FAQ(1/5)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관련 신청기간 및 횟수에 제한이 있는가?

▶ 25년부터 27년까지 3년 동안 매년 6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25년에 신청하였으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26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종속기업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배기업의 신청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결격사유는 지배기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배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 한편, 종속기업에 기인한 지배기업의 ① 연결 감사의견 비적정, ② 연결재무제표 수정•공시 및 ③ 감리는 지배기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배기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2026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주요 FAQ(2/5)

최근 상법개정으로 인해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1인에서 2인으로 확대되었는데, 평가기준에 차이가 있는가?

▶ 평가기준일('26.6.1일) 현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은 시행 전이므로 ('26.9.10 시행예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평가시 작년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

*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에 다라 1인은 100점, 2인은 200점

▶ 향후 개정 상법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조정하고 차기에 적용할 예정

감사위원회의 회계전문가와 회계•감사위원조직의 회계전문가는 동일한가?

▶ 감사위원회의 회계전문가

: 상법 시행령 제 37조 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계전문가

▶ 회계•감사지원조직의 회계전문가

감사위원회 회계전문가를 비롯하여

①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자 ②회계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자 ③그에 준하는 회계 전문성을 보융한 자로서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자를 포함

(*) ①한국공인회계사 경력 5년 이상, ②회계•재무분야 석사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연구기관•대학근무, 회계•재무분야 경력5년이상 ③ 상장회사 회계•재무 업무 경력 임원 5년 또는 직원 10년 이상, ④ 금융기관, 정부 등 경력 회계•재무 업무 또는 관련 감독업무 경력 5년 이상 ⑤ 금융업권협회 경력, 회계•재무분야 경력 5년 이상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주요 FAQ(3/5)

☑ 세무 관련 학력•경력•자격을 보유한 경우 회계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세무 관련 학력•경력•자격이 실질적으로 **세무회계와 밀접한 경우,** 타 요건 충족 시 **회계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계•감사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시 겸직 또는 파견 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 회사 소속이 아닌 **겸직•파견 직원이** 회사의 회계•감사지원조직에서 관련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회계•감사지원조직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파견 직원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투입시간 비중)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 소속회사가 지정유예 신청 시 **중복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주요 FAQ(4/5)

☑ 감사위원회의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평가•임면동의(협의)권 배점은 60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점 인정이 되는지?

▶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 또는 구성원 한쪽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거나, 평가 또는 임면 중 하나에 대해서만 있는 경우 **각각 ½씩 적용**합니다. 또한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회사의 인사 평가상 불이익 조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½의 범위 내에서 감정합니다.**

(예시)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에 대한 평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5점 부여**
구성원에 대한 평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5점 부여**
부서장에 대한 임면동의(협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5점 부여**
구성원에 대한 임면동의(협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5점 부여**

▶ 전담지원조직 업무 수행에 대한 인사•평가 상 불이익 조치 사실이 있을 경우 **최대 ½범위인 30점 이내** 감점합니다.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주요 FAQ(5/5)

☑ 회사가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적정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해 **회사가 추정한 감사시간•감사보수(하한, 상한, 기준치 모두 가능)**를 의미합니다.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추정방법 예시〉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감사시간 증가율 고려
- 과거 시간 당 감사보수에 물가상승률 반영
-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한 추정 감사시간
- 동종산업 및 유사규모 기업의 감사시간·보수를 벤치마크로 활용 등

☑ 회계법인에서 제안한 감사보수는 대외비 성격으로 외부공개가 어려울 경우, 다른 증빙은 제출이 가능한가?

▶ 회사는 합리적 사유 해당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①**감사인 선임관련 감사위원회 의사록** ②**감사인 입찰 제안서**(감사보수, 산출근거 포함) ③**감사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감점** 될 수 있습니다.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발간물 '삼정KPMGACI, 바로보는법규정책(2025.05.07)'을 참고 바랍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ites/kr/pdf/2025/aci/cardnews/삼정KPMG%20ACI_바로%20보는%20법규정책_20250507.pdf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2026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참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 배점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1. 감사기능 독립성(300)	1) 내부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200
	2) 내부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50
	3) 외부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50
2. 감사기구 전문성(200)	4)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50
	5) 회계전문성 확보 여부	50
	6)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	100
3. 회계•감사 시스템 실효성 (250)	7) 회계•감사지원조직 규모(상대평가)	50
	8)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상대평가)	40
	9)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40
	10) 전담지원조직 전문성(회계전문가 규모)	60
	11) 전담지원조직 평가•임면동의(협의)권	60
4.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150)	12) 감사인 선임•공모 절차 투명성	100
	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50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50
5. 자체노력(100)	15) 회사 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정성평가)	100
외부표창(+50)	16)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평가 및 표창	최대 +50
사회적 물의(-50)	위법•부장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	최대 △50
합계		1,000 (최대1,050)

❖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고,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즉시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정관•내규 반영 등 구속력 있는 방법 인정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